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의무화 등〉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75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의무화 등	2
※ 참고자료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6
2.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 요약	7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6.
3. 회부연월일 :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의무화 등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채무 관련 지원제도의 신청 요건과 절차 안내 및 행정지원’을 추가하고, 이를 포함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음(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 ----- ----- -----하여야 한다.
1. 재창업 지원	1. (현행과 같음)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채무조정·회생·파산 등 채무 관련 지원 제도의 신청 요건과 절차 안내 및 행정지원</u>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¹⁾ 결과에 따르면, 폐업 시점 기준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대상의 22.9%가 ‘대출금 상환’을 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는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부담이 원활한 폐업 및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52.6%)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복수응답)로는 ‘장기대출 상환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 정책’(63.9%)이 가장 높게 나타남.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따른 재창업·재취업 지원에 더하여 채무 관련 지원제도의 신청 요건·절차 안내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사업이 보다 안정적·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재량사항으

1) 중소기업중앙회,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3.19.

로 규정되어 있고,²⁾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수행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으므로 재정지원에 대한 유사 입법례와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고자료 1)을 추진 중이며,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600만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심화교육, 국민취업지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생략)

원제도(고용노동부) 연계 수당 지급 등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³⁾해 왔다고 설명함.

또한, 2025년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참고 자료 2)에서 현재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폐업 시 기존 사업자 보증을 신규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료 전액을 지원 중이라고 밝힘.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예산처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채무 관련 행정지원 등을 의무화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이 수반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정책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3)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5.12.2.

4)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 2025.10.15.

【참고자료】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 ('26년 예산) 3,055억원

□ 주요 내용

- **원스톱폐업지원(1,932억)**: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 지원
 - ①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 ② (점포철거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 ③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④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확대
- **특화취업지원(386억)**: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 연계 등을 통해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 ① (취업교육) (기초) 직업탐색, 자아성찰 등,
(심화) 구직자 정체성 확립, 대면취업상담 등
 - ② (전직장려수당) 심화교육 수료시 60만원 + 취업 후 일정기간 근속 시 40만원(총 100만원) 지원
 - ③ (국민취업연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 활동 시 20만원씩 6개월간 지급(최대 120만원) 지원(고용노동부 협업)
 - ④ (심리치유) 산림치유서비스 및 심리지원서비스 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협업)
- **재기사업화지원(738억)**: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을 위해 전문가 진단,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①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별 1:1 경영위기 문제 진단
 - ② (사업화교육)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경영 이론 및 실습교육(세무, 재고관리 등)
 - ③ (사업화자금)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금의 50% 자부담)지원
 - ④ (사업화PM 지원) 사업화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지원

□ 추진배경

- 소상공인 지속 증가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 집중* 등 과당경쟁 심화, OECD 주요국 대비 자영업 비중이 높고 창업 후 생존장벽 높음
 - * 도·소매, 음식숙박업 비중 : ('20) 36.1% ('21) 36.5% ('22) 37.2% ('23) 37.3%
- 최근 한계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연체율·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마련
 - * 사업자 폐업 수(만개) : ('20) 89.5 → ('21) 88.5 → ('22) 86.7 → ('23) 98.6 → ('24) 100.8

□ 주요내용

- (추진방향) “①부실 확대전 선제적 지원 강화, ②재기 종합지원, ③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기회 확대, ④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추진
- ① 전체 대출 소상공인 대상 위기징후 모니터링(매출·신용정보 등 활용), 부실 징후 소상공인 발굴 후 경영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 * 전체차주(약 300만명, 한은) : 소진공·지신보(대출차주 약 200만명)와 민간은행 등 협업 모니터링
- ②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채무조정 종합지원을 강화
 - *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재기지원' 복합지원 시스템 구축, 법원 협력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확대, 지역거점(새출발지원센터) 역할 강화, AI 활용 소상공인 종합상담
- ③ 신속한 폐업 지원*,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 강화**, 준비된 재창업자 선별 및 두터운 지원 등 단계별 지원 강화
 - * 사업정리컨설팅·점포 철거비 지원(600만원), 마이데이터 활용 신청서류 간소화 등
 - ** 고용부 협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및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 일경험 제공 등
- ④ 폐업 충격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등 제도정비, 재난·화재 등 안전망 강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 * 고용보험료 지원 단계적 확대, 고용보험 제도개선 등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 ** 성실상환자 정책금융 인센티브, 소상공인 대안평가, 영세 소상공인 경영바우처(약 5,790억원) 신설